

창원지방법원 2020. 8. 21 선고 2019나6335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0. 8. 21 선고 2019나63352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19. 9. 27 선고 2017가단15181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B(개명 전 성명: C)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

담당변호사 안동규

변론 종결 2020. 7. 10.

판결 선고 2020. 8. 21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. 9. 27. 선고 2017가단15181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86,454,5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양상익

판사강진명

판사이병호